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192 발의연월일: 2024. 9. 23.

발 의 자: 민홍철·복기왕·정준호

임광현 • 이건태 • 이용우

이연희 • 위성락 • 김문수

박수현 • 박홍배 • 윤준병

차지호 • 한정애 • 황 희

김준혁 • 이기헌 의원

(179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통계작성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통계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수정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중앙행정기관이 작성한 통계에 오류가 있었음에도 이를 수 정하고 공표하는 일이 지체되는 경우가 발생하여 관련 규정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통계작성기관으로 하여금 주기적으로 오류를 점검하도록 하고, 오류의 주기적 점검을 시행하지 않거나, 발견한 오류를 지체 없이 수 정하지 않거나, 이를 공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계청장이 해당 기관 의 장에게 시정 요구 또는 조치계획 수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6항 및 제36조제1항제7호의2).

법률 제 호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6항 중 "내용에 오류가"를 "내용에 오류가 있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고, 오류가"로 한다.

제36조제1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제27조제6항을 위반하여 오류가 있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하지 아니하거나 오류를 지체 없이 수정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공표하지 아니한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법행위의 시정 요구 등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1항제7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7조(통계의 공표) ① ~ ⑤	제27조(통계의 공표) ① ~ ⑤		
(생 략)	(현행과 같음)		
⑥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공표	6		
한 통계의 <u>내용에 오류가</u> 있음			
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고,		
이 수정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u>오류가</u>		
한다.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제36조(위법행위의 시정 요구 등)	제36조(위법행위의 시정 요구 등)		
① 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그 위			
반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거나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u><신 설></u>	7의2. 제27조제6항을 위반하여		
	오류가 있는지 주기적으로 점		
	검하지 아니하거나 오류를 지		
	체 없이 수정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공표하지 아니한 경우		
8. ~ 12. (생 략)	8. ~ 12.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